

청주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525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52598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18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은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1. 27.

판결선고 2023. 2. 17.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18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강현호, 판사 이종인